

#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9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2월 25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조례의 본문에서 각각의 “공공기관”을 “집행기관”으로 수정해 관계 법령과의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고, “정책연구용역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일반적인 정의로 수정하는 한편,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입법 취지를 강화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조례의 본문에서 각각 “공공기관”을 “집행기관”으로 수정해 관계 법령과의 용어의 혼선을 방지 함(안 제1조).
- “정책연구용역”에 대한 용어를 일반적인 정의로 수정함(안 제2조 제2호).

-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 공개 이행여부를 출자·출연기관에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이 없도록 서울시 모든 집행기관에 적용되도록 수정함(안 제6조).
- 시스템 개발과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해 시행시기를 “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”로 수정함(안 부칙).

#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의 제명 “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”을 “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”으로 한다.

안 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게 함으로써”를 “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”로 한다.

안 제2조제1호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집행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정책연구용역”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.

안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집행기관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과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연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안 제4조제1항 중 “공공기관은”을 “집행기관은”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2항 중 “공공기관의”를 “집행기관의”로 한다.

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평가 등)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각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안 부칙에서 “공포한 날부터 시행”을 “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”으로 한다.

## <수정안 조문대비표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게 함으로써</u>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“공공기관”</u>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</p> <p>가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과 소속기관</p> <p>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</p> <p>다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</p> <p>2. <u>“정책연구용역”</u>이란 <u>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등에 관한 연구·조사·검사·평가·개발 등 지적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책·시책·사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</u>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“집행기관”</u>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</p> <p>가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과 소속기관</p> <p>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</p> <p>다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</p> <p>2. <u>“정책연구용역”</u>이란 <u>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.</u>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          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공공기관</u>이 실시한 정책연구 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<u>공공기관과</u>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연구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시스템의 명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조(정책연구용역의 공개) ① <u>공공기관</u>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5조(비공개 대상 등) ① (생략)            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<u>공공기관의</u> 정책·시책·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6조(평가 등) <u>시장은 공공기관 중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장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관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각 공공기관에</u></p>	<p>제3조(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          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집행기관</u>이 실시한 정책연구 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<u>집행기관과</u>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연구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&lt;후단 삭제&gt;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4조(정책연구용역의 공개) ① <u>집행기관</u>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조(비공개 대상 등) ① (제정안과 같음)            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<u>집행기관의</u> 정책·시책·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.</p> <p>③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6조(평가 등) <u>시장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각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이 조례는 <u>공포한 날부터 시행</u>한다.</p>	<p>제7조(시행규칙) (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이 조례는 <u>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 행</u>한다.</p>

##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집행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가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과 소속기관

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

다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

2. “정책연구용역”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집행기관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과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연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4조(정책연구용역의 공개) ① 집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 및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비공개 대상 등)** 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집행기관의 정책·시책·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공개 보류 대상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6조(평가 등)**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각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.